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6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4

1.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4
2.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 8
3.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15
4. 지분의 연속성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변경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21
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 26
6.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30
7. 법인세 중간예납 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중간결산 기준 계산 의무화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36
8. 연결납세의 적용방식 변경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44
9.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안도걸의원안, 정부안) ····· 53
10.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 59

1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 62
1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64
13.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및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67

Ⅰ. 개요

1.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6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또한,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함.

그 밖에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

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 (안 제6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 (안 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

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안 제93조의3제3항 신설, 안 제93조의3제4항·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 (제21조)	□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 (현행과 같음)
○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현행과 같음)
○ 벌금, 과료, 과태료	○ (현행과 같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현행과 같음)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u>위반에 대한 제재로서</u> 부과되는 공과금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u>위반을 이유로</u> 부과되는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 2건의 개정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세금과 공과금 중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지만,[1] 세금 또는 공과금을 부과한 목적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①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②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③벌금, 과료, 과태료, ④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⑤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⑥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일부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이 중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게 되면 그 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 상당액을 사실상 국가가 보조하는 효과가 나타나 제재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는 현행 법령과 달리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을 열거했는데 여기에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2] 도 포함됐음.

그러나 공과금은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열거된 공과금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7년 7월16일 선고 96헌바36결정)에 의해 1997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①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②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닌 나머지 공과금들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음.

그리고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여전히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했음(서이46012-10673, 2001년 12월5일).

□ 개정안은 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뿐만 아니라 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과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규정은 손금불산입 대상을 “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 불이행 등을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중 제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정부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나,[3]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

3) 법인세제과-145, 2018. 2. 21.

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4)]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공과금은 수익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경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반을 이유 부과된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경우,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공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적 목적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 12. 5. 선고

2.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4조)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기부금 정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 (현행과 같음)
○ 특례기부금(50% 한도로 손금산입)	○ 특례기부금(50% 한도로 손금산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현행과 같음)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가액	- (현행과 같음)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	- (현행과 같음)
-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현행과 같음)
- 다음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	* 해당 병원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추가

*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 2건의 개정안은 특례기부금(舊 법정기부금) 대상에 해당하는 병원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하여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특례기부금(舊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舊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①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②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손금 산입한 50%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③ 비지정기부금은 50% 기부금과 10%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법인기부금 제도 연혁]

개정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5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축소(100→75('06～'08)→50%('09～)),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신설(1년)
2011	·지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5→10%),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2012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1 → 3년)
2014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3 → 5년)
2018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산입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그 외 기부금 손금 산입 제외
2019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 확대(10%→20%)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2020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

개정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21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 삭제 (법정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을 10% 한도 기부금으로 지칭)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규정
2022	·50% 한도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10% 한도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 변경

[기부금 현황]

(단위: 조원)

구분	개 인			법 인	총 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소계		
2008	4.27	1.39	5.67	3.37	9.04
2009	4.64	1.51	6.15	3.46	9.61
2010	4.86	1.67	6.53	3.50	10.03
2011	5.18	1.90	7.09	4.07	11.15
2012	5.54	2.19	7.72	4.11	11.84
2013	5.58	2.25	7.83	4.65	12.49
2014	5.15	2.57	7.72	4.91	12.62
2015	5.41	2.52	7.93	4.78	12.71
2016	5.63	2.59	8.22	4.65	12.87
2017	5.78	2.18	7.72	4.63	12.95
2018	6.01	2.78	8.79	5.09	13.88
2019	6.27	2.95	9.21	5.29	14.50
2020	6.27	2.92	9.19	5.15	14.35
2021	6.56	3.73	10.30	5.26	15.55
2022	6.91	3.79	10.70	4.40	15.1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최근 연구중심병원의 산업·병원·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인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률[5]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변경되었음.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1년 연구중심병원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연구중심병원이 연구 성과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업화에 따른 수익이 병원에 귀속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즉, 대학병원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이용하여 특허출원·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연구 성과 수익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며,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특허출원·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병원의 연구 성과 수익은 법인으로 귀속되어 온 것임.[6]

---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024.1.16. 개정)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

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19호) 검토보고서, 2023.4.

[연구중심병원 법인 유형]

구분	학교법인 (4개)	특수법인 (2개)	의료법인 (2개)	사회복지재단 (1개)	사회복지법인 (1개)
연구중심 병원 (10개)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산학협력단 유무	있음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는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여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산업·병원·연구 협력에 관한 주요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수익이 병원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수익을 연구비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산학협력단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음.[7)]

---

7)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다. (생 략)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기부금 유형별 범위]

구 분	구체적 범위
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3.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제32조)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 대상: 보험회사	○ (현행과 같음)
○ 요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	
○ 손금산입 방법: <u>소득금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을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u>	○ 손금산입 방법: <u>소득금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을 한도로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u>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 2건의 개정안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규모를 법인이 적립액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8]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로서, 우리나라는 2011년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였음.

보험계약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은 기존에 IFRS4를 통해 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각 국의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한

8) 금융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 아래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계제정기구인 IASB가 설립되었음. IASB는 1973년 10개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회계관련기관이 설립한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 기반하고 있으며, 2002년에 명칭을 IASB로 변경함.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이에 IASB에서는 IFRS4를 대체하는 신 보험계약회계기준인 IFRS17을 공표하였음. 우리나라도 IFRS17을 도입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였음.

IFRS17 도입 이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으로 평가했으나, IFRS17이 도입되면서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활용하여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를 위해 해약률 등에 대한 평가시점의 가정에 따라, 보험부채를 미래현금흐름[9)]·할인율[10)]·위험조정[11)]·보험계약마진[12)]으로 구분하여 산출함.[13)]

그런데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됨.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주주의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배당수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9) 미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의 평균값으로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한 순 유출액으로 산출함. 현금유출액은 보험금, 직접사업비 등이 포함되고 현금유입액은 보험료가 해당됨.

10) 할인율은 미래현금흐름의 시간가치로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 조정하여 산출함.

11) 위험조정은 현행 정보로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부채임.

12) 보험계약마진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은 보험계약에 대한 미실현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향후 점진적인 이익으로 전환됨.

13) 보험연구원,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경영」, 2023. 4.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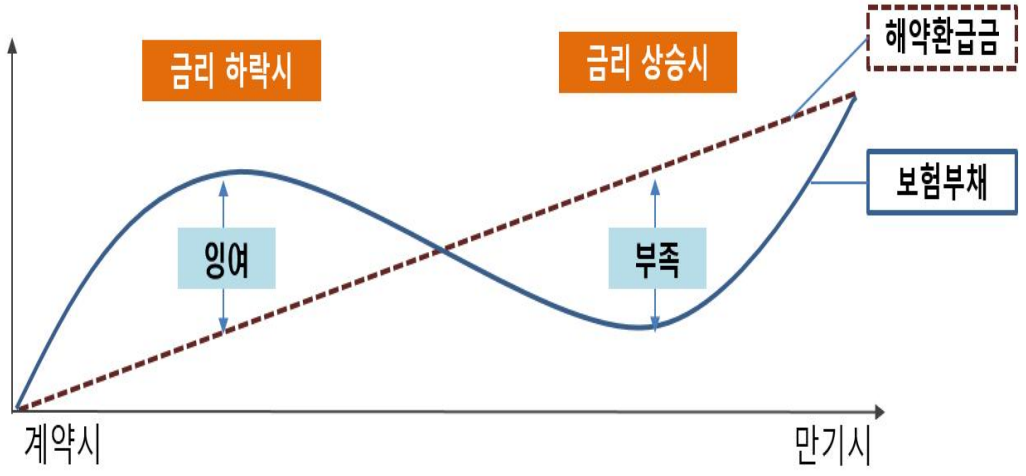

- 금리하락 → 시가평가 할인율 하락 → 보험부채 증가 → 「보험부채 > 해약환급금」
- 금리상승 → 시가평가 할인율 상승 → 보험부채 감소 → 「보험부채 < 해약환급금」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사외유출되면 보험계약의 대량 해약 시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하게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14]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경우, 보험사가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음.[15][16]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배당

14)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 해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의미함.

15)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책임준비금(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부채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은 차감한다)과 특별계정부채(제6-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의 합계액(단,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을 가산한다.)
2. 제7-66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단, 보험계약대출 실행 잔액 및 보험계약 해지시 재보험사와 정산할 금액은 가감)

가능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 전·후의 재무상태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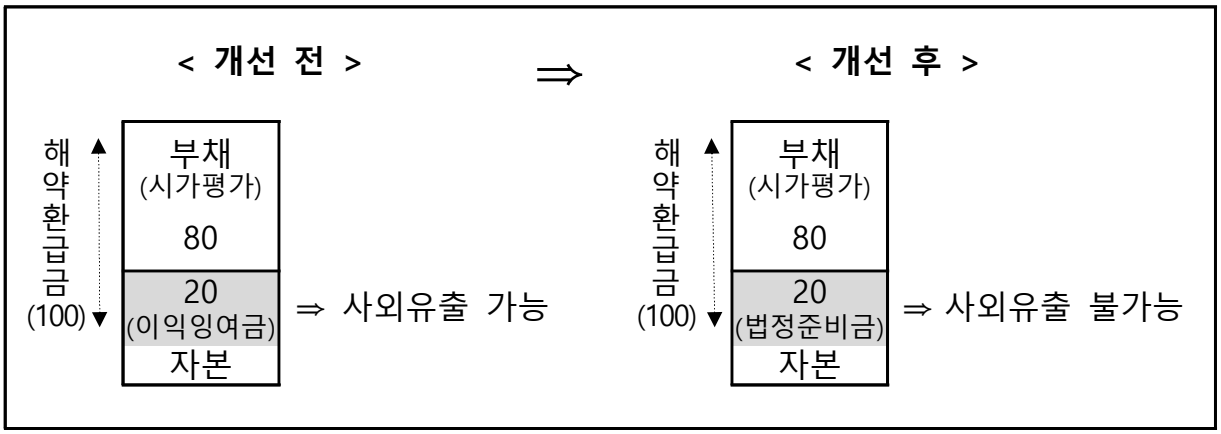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책적 목적으로 적립된 준비금의 특성을 인정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손금산입 규정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17]

2022년 말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23.7조원이었으며, 2024년 6월 기준 38.5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16) 이미 적립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환입함.

17) 「법인세법」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

(단위: 조원)

연도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6월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	23.7	32.2	38.5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종전(IFRS4)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2024. 10.

□ 그런데 현행 규정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인세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인이 손금산입 규모를 적립액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법인세 신고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유목적사업준비금[18]·비상위험준비금[19] 등 유사한 타 준비금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18)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9) 「법인세법」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적립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규모를 선택하도록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지분의 연속성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변경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46조)	□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근거 마련
○ 적격분할 요건(제46조제2항) * 적격분할 시 분할에 의한 자산 양도에 대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봄	○ 적격분할 요건(제46조제2항)
- 사업의 목적성: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③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 (현행과 같음)
- 지분의 연속성: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말함)되고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지분의 연속성: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사업의 계속성: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현행과 같음)
- 고용의 승계·유지: 승계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을 유지할 것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 2건의 개정안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을 반영하여,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하려는 것임.

□ 회사의 분할이란 회사가 재산·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복수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함. 분할은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분할대가)이 귀속되는 대상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는데, 인적분할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것이고, 물적분할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이 전부 교부받는 것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적격분할요건을 사업의 목적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승계·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21] 제47조제1항에서는 물적 분할과

---

20)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74호, 입법 예고기간 2024.6.4. ~ 2024.7.16.

21)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관련한 적격분할요건으로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22]

[적격분할 요건]

구분	내용
사업의 목적성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법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할 것
지분의 연속성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할 것 - 분할법인의 특정한 지배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사업의 계속성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고용의 승계·유지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2)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분할이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매수차익 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됨.

[분할에 따른 과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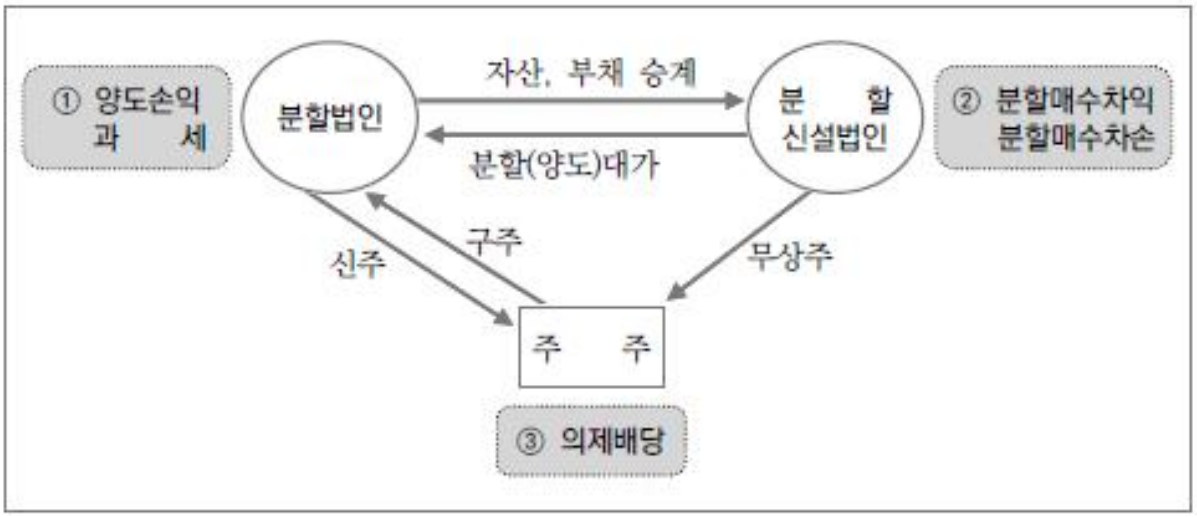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현행 제도는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을 위해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6월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23]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적격분할의 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도록 하는 요

23)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음. 그러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으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자사주 마법')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것임.

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신주 배정 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사주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기업분할도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주식의 신주 배정 비율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인데, 구체적인 신주 배정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은 분할 시 신주를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의 자사주를 제외한 주주의 소유 주식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도록 현행 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안도걸 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51조의2)	□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현행과 같음)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현행과 같음)
○ 공제방법: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공제방법: ①+②+③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이하 "미공제 배당금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① 이월결손금, ② 이월된 미공제배당금액, ③ 당기 배당금액
- 이월한 초과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 및 나중에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이월한 미공제 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 및 나중에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 2건의 개정안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이월공제 대상 미공제 배당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과 배당금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24]을 위하여 법인단계 조정제도와 주주단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법인단계에서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이월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2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구 분	제 도	내 용
법인단계 조정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15조제2항제3호)	동업기업이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로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에게만 과세하는 제도
	배당소득공제 (제51조의2)	투자회사 등의 명목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주주단계 조정제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에 더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24)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에 대하여 독립과세론과 통합과세론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통합과세론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고 있음.

25)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제도는 사실상 도관에 불과한 법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출자자들에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음.[26]

또한, 2022년 세법개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 이를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과배당액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2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제도 개정연혁]

개정연도	개정내용
1999.12월	제도 신설
2003.12월	제도 대상에 선박투자회사 추가
2004.1월	제도 대상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추가
2005.12월	제도 대상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SPC 추가
2006.12월	제도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추가
2020.12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조특법」으로 이관
2022.12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 신설

26)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7)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와 달리 재무제표 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에도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커서 초과배당액이 발생한 경우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액을 소득공제하지는 못한다고 해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월공제 규정을 도입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17165호) 참고].

□ 개정안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과 배당금액(이월된 미공제배당금액 포함)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에서는 이월공제 대상 배당금액을 단순히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되는 공제금액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A)이 80, 이월결손금(B)이 30, 당기 배당금액(C)이 100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서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공제 대상 배당금액으로 보면 당기에 공제받지 못한 50[C-(A-B)]을 모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공제 대상 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월가능한 공제금액은 20(C-A)만 가능해져 법인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

실무에서는 국세청 예규[28]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이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8) 사전-2023-법규법인-0312

6.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과표구간 및 세율 (제55조)

○ <신 설>

○ 내국법인에 대해 통일된 법인세 과표구간 적용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tr></table></td><td>□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tr></table>
○ 그 외의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tr></table>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td></tr>
</table>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 2건의 개정안은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을 늘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

규모 법인과 소득구조가 유사한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19%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일반법인	9%	19%	21%	2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19%		21%	24%

□ 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29]

성실신고확인대상은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

29)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과 ②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

구분	요건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주)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법인은 총 40,514개였음.

[2019년~2023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법인 수	14,134	19,714	25,433	30,824	40,514

주)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기준
자료: 국세청

한편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업종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4단계 누진 구조임. 최고세율은 24%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수준임.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9%	19%	21%	24%

□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19%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이자·배당 규모가 크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높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 소득세율은 6~45%이고 법인세율은 9~24%로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자·배당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산출세액이 2,0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과세표준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약 2.1배로 증가함.

참고로, 캐나다는 5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고 있음.

[캐나다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 거주자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 •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제외
소득성격	•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인적용역 등 투자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과세방식	법인세 추가과세 + 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배제
과세표준	투자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세 율	29.67%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에 비해 이미 다양한 규제가 적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세율 인상과 같은 차별적 조치의 적정수준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음.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함. 그리고 일반 법인에 비해 기업업무추진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축소됨.[30]

둘째,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고, 현행 「법인세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3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3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 범위가 일반법인의 50% 수준임.(「법인세법」 제25조, 제27조의2)

31) 인용되는 제60조의2제1항제1호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32]

32) 헌법재판소는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시한바 있음.(1999. 1. 28. 선고 98헌가17 전원재판부)

7. 법인세 중간예납 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중간결산 기준 계산 의무화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간예납의무 및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3조, 제63조의2)	□ 법인세 중간예납 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중간결산 기준 계산 의무화
○ 적용대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현행과 같음)
○ 중간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현행과 같음)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원칙 - ①, 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② 중간결산 기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원칙 - 일반법인: ①, ② 중 선택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② 적용
○ 구체적 상황별 적용 계산방법	○ 구체적 상황별 적용 계산방법
- ① 적용: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② 적용: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 ② 적용: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

현 행	개정안
	외)으로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8)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연결중간예납 계산방법 규정
○ 적용대상: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	○ (현행과 같음)
○ 중간예납기간: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현행과 같음)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원칙 - ①, 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② 중간결산 기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원칙 - 일반법인: ①, ② 중 선택 -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적용
○ 구체적 상황별 적용 계산방법	○ 구체적 상황별 적용 계산방법
- <신 설>	- ① 적용: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적용: *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적용: *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없는 경우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 2건의 개정안은 기업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33]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이며,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임.[34]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①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

33)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34)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2월 말에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함.

하는 방법(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중간결산 기준)이 있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1. 직전 법인세 기준

$$\left[\begin{array}{c}\text{산출세액}\\ \text{+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 \text{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end{array}\right] - \left[\begin{array}{c}\text{공제·감면세액}\\ \text{원천납부세액}\\ \text{수시부과세액}\end{array}\right] \times \frac{6}{\text{직전 사업연도 월 수}}$$

자료: 국세청

[중간결산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2. 중간결산 기준

$$\left[\begin{array}{c}\text{과세표준}\\ \text{[소득금액(익금 - 손금)}\\ \text{- 이월결손금]}\end{array}\right] \times \frac{12}{6} \times \text{세율}^{*} \times \frac{6}{12} - \left[\begin{array}{c}\text{공제·감면세액}\\ \text{원천납부세액}\\ \text{수시부과세액}\end{array}\right]$$

자료: 국세청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 중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81.9%의 기업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을 선택했으며, 18.1%의 기업이 중간결산 기준을 선택했음.

[중간예납 법인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간예납 법인수		630,596	445,402	399,693	392,230	413,617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수	329,146	322,259	311,522	319,648	338,614
	(비중)	(52.2)	(72.4)	(77.9)	(81.5)	(81.9)
중간결산 기준	법인수	301,450	123,143	88,171	72,582	75,003
	(비중)	(47.8)	(27.6)	(22.1)	(18.5)	(18.1)

자료: 기재부

또한, 2022년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된 법인세액은 24조 1,919억원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결산 기준으로 납부된 법인세액은 7조 859억원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음.

[중간예납세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간예납세액		240,743	214,817	193,184	242,279	312,778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세액	185,061	141,657	149,810	200,749	241,919
	(비중)	(76.9)	(65.9)	(77.5)	(82.9)	(77.3)
중간결산 기준	납부세액	55,682	73,160	43,374	41,530	70,859
	(비중)	(23.1)	(34.1)	(22.5)	(17.1)	(22.7)

자료: 기재부

한편,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가 지정되어 전년 대비 6개 증가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대비 242개 증가한 3,318개임.[35]

□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기업의 영업실적이 직접 사업연도에 비해 좋아지는 경우에도,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기업의 증가한 담세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그러나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개선된 영업실적과 증가한 담세력을 반영하여 기업이 더 많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게 됨.

둘째, 경기 활성화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경우, 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음.

기업들은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을 선택할 때, 중간예납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산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있음. 그런데 중간결산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면, 중간예납세액을 줄이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을 선택했을 기업이 중간결산 기준 적용으로 더 많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법인세 수입이 조기에 징수되는 효과가 있음.[36]

셋째, 정부가 중간결산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법인세 세수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연도 각 기업의 영업실적과 세액감면규모 등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초에 기업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법인세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음. 이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면, 계산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일부 기업들은 중간에 더 많은 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중간예납세액 규모가 증가하여도 기업 입장에서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총 법인세액 규모는 증가하지 않지만, 법인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중간예납세액 증가분에 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됨.

둘째, 기업 입장에서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기

36) 각 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각 사업연도의 총 법인세액 규모는 변동이 없음.

위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에 해당하는 기업 중 49.1%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매출액(10억원~12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37]

개정안은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중간결산 기준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제외 대상 기준을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하면, 일부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37)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공시대상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분석', 2024. 6.

8. 연결납세의 적용방식 변경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제76조의22)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 보완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적용기간 확대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 (현행과 같음)
○ 적용방법	○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5년간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 2건의 개정안은 ①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을 변경하고, ②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5년간).

□ 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법인·자법인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임.[38)]

종전 우리나라는 법인단위로 과세하는 개별납세방식만 시행하였으나, 개별납세방식은 기업조직을 사업부제와 자회사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존재하였음. 가령, 사업부제의 경우에는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결손이 다른 사업부의 소득과 통산되지만, 사업부 등을 분사 또는 자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의 결손이 통산되지 않고 흑자법인에 대해서만 과세되어 사업부제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으로써 기업의 조직구성에 관한 조세의 중립성[39)]을 보장하고,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세법 개정 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음.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므로 연결집단의 모든 개별 법인이 각각 개별납세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감소

38)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2022. 12.

39) 조세의 중립성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부담이 되도록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개념임.

할 수 있는 한편, 연결집단의 소득 합산으로 과표구간이 변경되면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개별납세와 연결납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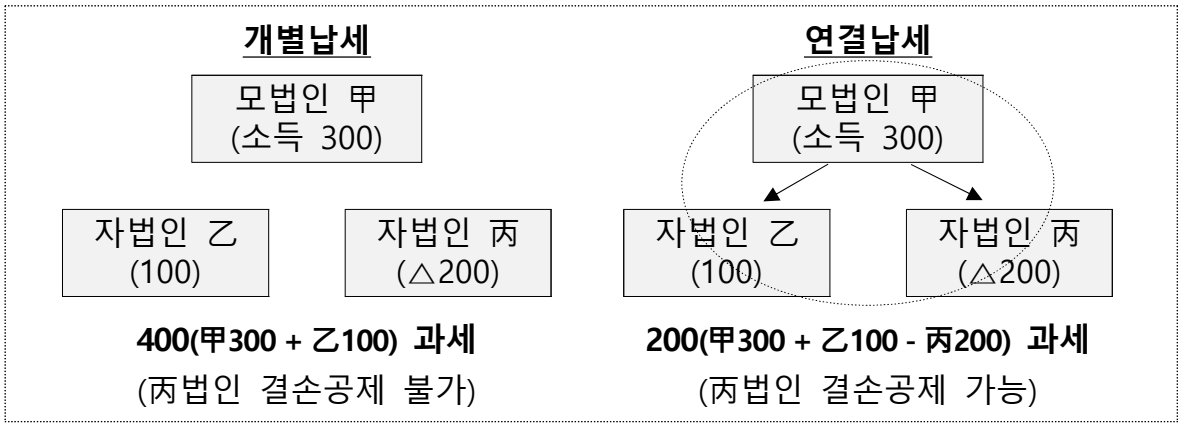

2008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자법인에 대한 모법인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후 연결납세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 90% 이상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또한, 결손법인(연결자법인)의 결손금액을 연결모법인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지분율을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결소득의 배분방법을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결지배를 인정받아야 하며,[40]

40)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경우 해당 법인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자회사의 일부만 선택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음.[41]

한편,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각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 제76조의22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2]

---

41)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42) 「법인세법」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변경

□ 현행 법령은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하나의 연결집단에 속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대기업 규모인 연결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은 일반기업으로 취급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못함. 그런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한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은 여전히 중견기업으로 취급되어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즉, 같은 연결집단 내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감소하여 과세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현행 법령에 따른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의 취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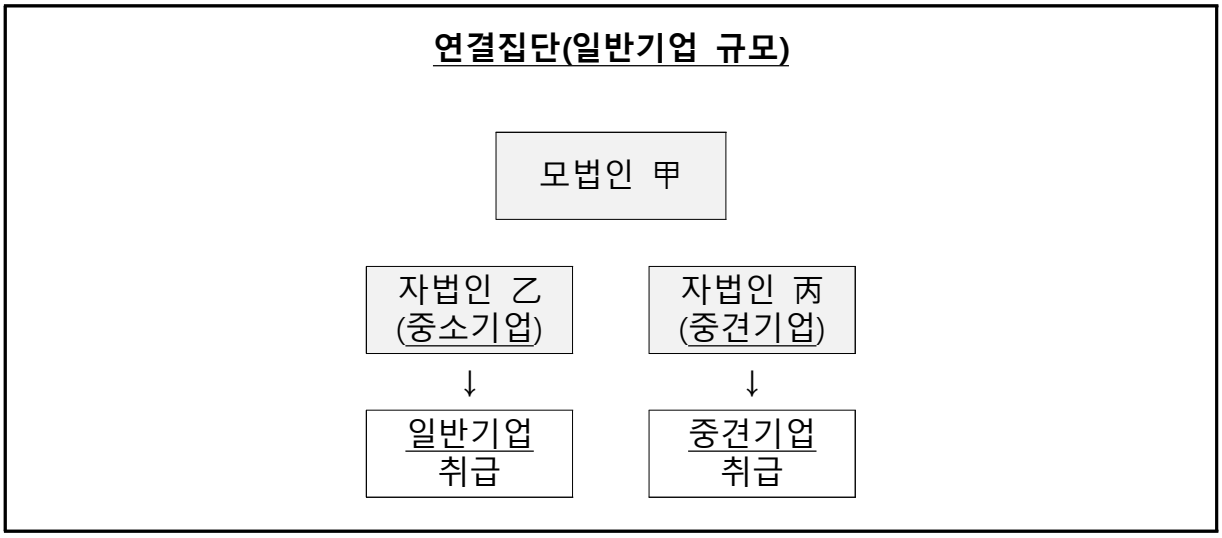

□ 이에 개정안은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 규모인 연결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더 이상 중견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데,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일정기간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 개정안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한을 현행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에서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5년간'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중소기업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각종 조세특례는 대부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43]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특례도 다수 존재함.[44]

참고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기업이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3→5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

둘째,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회사의 분사 여부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직개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연결납세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하려는 취지이므로 조직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사업부제와 분사(자법인) 간의 세제혜택 차이가 발

43)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는 일반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각각 1%, 5%인 반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10%로 더 높은 수준임.

44)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제19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됨.

생하는 기간을 늘리면 조세의 중립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대기업이 사업부제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해당 사업부를 중소기업 자법인으로 분사한 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사업부는 최초 도입연도와 그 후 3년간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부제인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낮아짐.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적용기간을 늘리면 분사한 자법인이 세제혜택을 적용받은 기간이 2년 늘어나, 사업부제와 분사 간 세부담의 차이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하려는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이 도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연결납세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연결기간에 걸쳐 연결법인의 상당한 결손금 발생이 예상되어 전체적 세부담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택됨.[45]

즉, 연결납세제도 도입 자체가 이미 기업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줄

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2021. 9.

어드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늘려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9.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안도걸 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93조의3)	□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 (대상) 국채 및 통화 안정증권	○ (현행과 같음)
○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 투자	
○ (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 방법	○ 사무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❶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 증명서 취합·제출 ❷ 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❶&❷모두)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 증명서만 제출
○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어느 경우든 내국법인은 직접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 공모·사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내국법인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 (의안번호496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 2건의 개정안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투자

기구에 대하여 사모 및 공모펀드를 불문하고 동일한 비과세 절차를 적용하여 펀드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46] 이 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등이 포함됨[47].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48]

□ 이때 공모국외투자기구와 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모국외투자기구는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로 비과세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9] 이는 현행법령상

---

46) **「법인세법」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7)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50]와 「법인세법」제93조의3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51]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직접 거주자증명서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며 비과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52], 사모국외투자기구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49)「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이 다음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국외투자기구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50) 「법인세법」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51)「법인세법」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52)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음의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1)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

하위투자자별로 비과세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임.

□ 한편, 현행법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공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음.[53)]

사모국외펀드는 상기 규정에서 볼 수 있듯 ① 투자자별로 실질귀속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비과세신청을 해야하고 ②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지급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지 않아 투자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동 조항이 '국채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신청·원천징수 면제 특례에 관한 조항임을 고려할 때, 국채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공모·사모펀드에 동일 비과세 절차를 적용하여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구체적으로 ①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규정하여, 사모국외투자기구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4

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 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를 말한다)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53) **「법인세법」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제1항제2호제가목의 특례가 적용되어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직접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서 사모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신청을 투자기구 단위로 시행하고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면제되는 경우, 투자기구가 투자자별 정보 취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지급자가 사모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펀드투자자의 편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54]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개정안의 규정은 이에 대한 예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55] 특히 OECD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실질귀속자로 보는 규정을 조세조약에 둘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56] 사모투자기구는 현실

5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5) 국외투자기구가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과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여야 함. 「조세조약 적용기준에 따라 분석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의 문제점」, 이경근, 2014

56) OECD CIV(Collective invstment vechicles)에 대한 조세조약적용에 대한 보고서

적인 운용실태를 고려할 때 각 사안별로 수익자 소유자(실질귀속자)[57]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58]

둘째, 공모형[59]과 사모형[60] 국외투자기구의 특성에 비추어,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상 사모국외투자기구는 외국법인별로 제출한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와 소득지급자용 거래·보유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모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 및 소득지급자용 거래·보유 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같은 수준의 서류 제출만을 요구하고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경우, 사모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을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음.[61]

---

57) 「국세기본법」제 14조, 「법인세법」제4조,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등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58)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이미현, 조세학술논문집, 2015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60)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1) 한편, 공모투자기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모투자기구는 투자운용제한 규정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 투자자의 보호 수준이 상이한 투자기구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제93조의3제6항,제7항) ○ <신 설> *「국세기본법」에 따라 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	□ 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외국법인의 직접 경정 청구 가능 - (청구자)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신청서,거주자증명서 등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496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 2건의 개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법 제93조의3제1항 및 제2항[62]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직접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62) **「법인세법」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대상자 중 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63]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한 경정청구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국채등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절차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동법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야만 했던 권익구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음.

□ 다만, 외국법인[64] 및 적격금융회사 등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경정청구권을 부여한 현행법 및 판례 등[65]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

6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64) 국외투자기구의 하위투자자인 외국법인

65) 대법원 2022.10.26. 선고 2020두 47937 (①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을 같은 조에서 '실질귀속자'로 부르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을

「법인세법」은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와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경정청구권 또한 실질귀속자에게 부여하고 있음.[66] 그러나 개정안은 공모투자기구뿐만 아니라 사모투자기구 또한 모두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67], 경정청구권을 외국법인에게 부여한 것은 실질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현행법상 원칙에 예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66)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동 보고서 p.1, 외국법인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1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의무 (제98조의4제1항)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제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 신청의무 면제 대상 소득	○ (현행과 같음)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삭 제>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

*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496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3526)

□ 2건의 개정안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혜택 적용을 받기 위해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의무를 부과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 원천소득 중 ①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②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청의무를 면제하고 있음.[68]

68)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그러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해 신청을 면제할 이유가 크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인적용역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체류기간, 금액 등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나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상황임.

□ 개정안은 이에 비과세 요건, 소득 구분 등 오류[69]로 과세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원천징수의 적정여부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여전히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의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의무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70] 고정사업장이 없을 때 조세조약상 국내과세권이 없어 과세정보의 확보 필요성이 낮기 때문임.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9) 조세조약상 국내과세권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임에도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하거나, 사용료 소득임에도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70)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1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제112조의2)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의무	○ (현행과 같음)
- 대상: 기부금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은 제외) 발급 법인	
- 보관기간: 5년	
○ <신 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3억원 이상으로서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 2건의 개정안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보관의무 및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이 면제됨.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는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해야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반면, 기부금단체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함.

[종이기부금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및 관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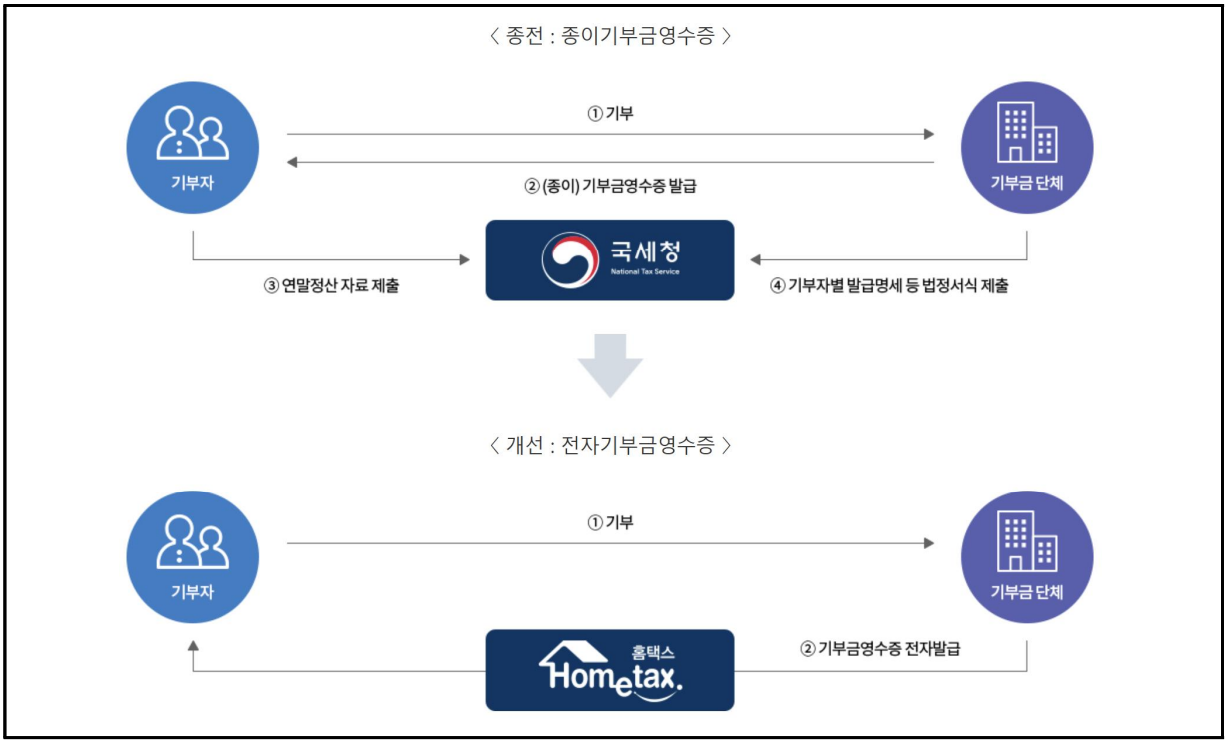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발급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기부자가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이 줄어드는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늘어남으로써 기부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둘째,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을 늘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참고로,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1,000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포함됨.

□ 다만, 개정안은 기부금단체에 대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적용대상인 기부금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및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제120조의4)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제120조의4)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제120조의4)
○ 제출대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대상:「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좌 동)
○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 (대통령령)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	○ (현행과 같음)	○ (좌 동)
○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 시행일: 2025.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제출기한: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현행과 같음)	○ (좌 동)
○ <신 설>	○ 사후관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좌 동)

현 행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2025.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
□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24조)	□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24조)	□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24조)
○ <신 설>	○ 제출명령 미이행시 가상자산사업자에 최대 2,000만원 부과 - 시행일: 2026. 1. 1.	○ (좌 동)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6),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0)

□ 2건의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변경하고,

② 국세청장이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명령 미이행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안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조문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이고, 안도걸의원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71]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72] 그리고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년 3월에 개정되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가상자산이용

---

7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72) **「법인세법」**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가상자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활한 법인세 부과·징수에 기여할 수 있음.

현행법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주체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한 사업자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73]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자료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7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하려는 것임.

참고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종료 이후 15년간 가상자산거래기록을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74]

둘째,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으로써 거래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6.0조원 수준이고 거래가능이용자가 778만명에 달하는 등[75]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역외 탈세 등 탈루사례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효율적 과세 및 탈세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와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은 연간 약 80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자료의 누적·통합 관리를 위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7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4. 5.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개요]

자료: 국세청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검증·세무조사 등을 위해서는 거래자료 제출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거래내역 제출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세원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는 마련하고 있는 반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거래자료의 미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고의적인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거래자료의 의도적 누락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76]

□ 한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은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하는 시급성, 자료제출을 위한 수범자의 적응기간, 집행을 위한 과세관청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76)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